



[ 2016.1.15.] [ 60 , 2016.1.15., ]

( ) 02 - 2100 - 3541

1

1 ( ) 「 」

[ 2010.11.5.]

2 ( )

1. " " 「 」 ( , , ), 「 」 ( " " ) 7 1

2. " " 「 」 ( " " )  
2 1 가 「 가가 」 가가 가

[ 2010.11.5.]

3 ( )

[ 2010.11.5.]

2 가 가 < 2010.11.5.>

4 ( 가 ) 10 가

가  
[ 2010.11.5.]

5 ( 가 가 가 ) 10 1 1 가 가  
가 가 , 가 6

1 4 5 가

1. 가  
2. 가  
가

3. 가 2  
가

10 1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2013.3.23., 2014.11.19., 2015.8.19.>

[ 2010.11.5.]

[ 2015.8.19.]

6 ( 가 가 ) . . ( )  
 10 1 2 가 가 가 가  
 . < 2013.3.23., 2014.11.19.>  
 1. . 가  
 2. . (工種別) 가  
 3. .  
 4. , 8 1 ( 10 )  
 5. , ( ) 8 2 ( 3 )  
 ) 가 가 가 가  
 1. 가  
 2.  
 3.  
 4.  
 5.  
 6.  
 7.  
 1 6 8 1 10  
 8. 2 7 8 2 3  
 1 2 가 가  
 , . < 2013.3.23., 2014.11.19.>

[ 2010.11.5.]

7 ( 가 가 ) 6 1 가 가  
 가 가 , . < 2013.3.23., 2014.11.19.>  
 1. 가 「 」 15 가 . , 가  
 . 가 .  
 2. 10 1 3 가 가  
 1 1 가  
 1. 「 가 」 10 가 100 15 가 .

2. ( )  
 [ 2010.11.5.]

8 ( 가 가 ) 가 가 가  
 . < 2016.1.15.>

1. : 100 6
  2. • : 100 14
  3. • 가 • : 100 8
  4. • : 100 9
  5. • • : 100 14
  6. • • • • : 100 8
  7. • : 100 12
  8. 1 • : 100 6
  9. • • • : 100 7
  10. : 100 8
  11. 1 10 • : 100 11
  12. • : 100 10
  13. • : 100 9
  14. : 100 8
  15. , , : 100 5
  16. • : 100 10
  17. : 100 6
- 가 가 가

가  
 . < 2013.3.23.,  
 2014.11.19.>

1. : 100 15
2. • : 100 25
3. : 100 10
4. : 100 10

[ 2010.11.5.]

9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가 " ) 가 . < 2013.3.23., 2014.11.19.>

1. 가 100 50  
 가 가  
 .  
 . 「 」 5  
 . 「 」

- 2. 「 」 2
- 3. 「 」
- 4. 「 」 23

가 2 가 가 .< 2013.3.23., 2014.11.19.>

[ 2010.11.5.]

- 10 ( 가 가 ) 10 1 4 가 , 가  
 가 가 , .
- 1. 가 : 「 가 가 」 5 가 가 ( 「 가가 )가 가 가
  - 2. 가 : 가 가
  - 3. 가 : 3 가

[ 2010.11.5.]

- 11 ( 가 ) 가 .
- 1. 「 가가 」 가가
  - 2. 「 」
  - 3. 「 」
  - 4. 「 」
  - 5. 「 」
- 가 가 가 6 1 2 가 1  
 1 가 , 1 1 가가 가 가가  
 2 가 「 가가 」 12 1 「 」 106 가  
 1 가가 가 6 1 .

[ 2010.11.5.]

- 12 ( 가 ) 17 가  
 가 .
- 1 가 가

[ 2010.11.5.]

- 13 ( 가 ) 19 2  
 가 가 .

[ 2009.8.7.]

3

- 14 ( 가 ) 13 1 3 " " 「 」  
 168 , 「 」 111 「 가가 」 5  
 . < 2013.3.23., 2014.11.19.>

가  
, 13 1 1 2

( ) 가

15 가  
2  
[ 2010.11.5.]

15 ( 가 )

가

1

가

1.

:

가.

가· 가·

· ·

( )

2.

·

:

가.

가· 가·

· ·

( )

·

(

)

3.

:

가.

가· 가·

· ·

( )

1

2

「 」 36 1

,

( )

1.

:

가.

,

( )

2.

·

:

가.

,

( )

·

3.

:

가.

,

( )

1

가

1

가

1

14

3

( " " )

.<

2013.3.23., 2014.11.19.>

가

5

가

1. 가

2.

3. 가 가

[ 2010.11.5.]

16 ( 가 ) 가

가 92 가 1

[ 2010.11.5.]

17 ( 가 ) 가 가

13 가 가

[ 2010.11.5.]

18 ( 가 ) 14 16

, 92 가

1. 가 가

가 가

「 」 5

「 」

2.

[ 2010.11.5.]

19 ( ) 17

1. 1 가

2. 1 가 가

3. (數人) 가 , ,

[ 2010.11.5.]

20 ( )

1.

2. 36

3. 45

4.

[ 2010.11.5.]

21 ( 2 ) 2

가

[ 2010.11.5.]

22 ( ) 11 가 가  
가  
1 가 100 5 .

[ 2010.11.5.]

23 <2010.11.5.>

23 2(2 ) 18 1 3 " "  
. < 2013.3.23., 2014.11.19.>

- 1.
2. (檢針)
- 3.
- 4.
5. 1 4

[ 2010.11.5.]

24 ( ) 20 1 6 " "  
. < 2013.3.23., 2014.11.19.>

1. :  
가. 「 」 100  
「 」 7 . , 「  
」 2 3 「 」 「 10  
「 」 , 「 」 , 「 」  
, 「 」 , 「 」  
5  
2. . . :  
가. 「 」 「 가 」 4  
, 「 」  
1 5  
「 」 . 5 1  
, 5 1  
5

[ 2010.11.5.]

25 ( ) 20 1 가 가  
,  
가 20 1 1 3 5 .  
가

. < 2011.12.26., 2013.3.23., 2014.11.19.>

1. :  
가 . . . ,

가. . 1  
( 가 50 0.7 )  
. 가 ( 「 」  
) 1

2. : 가 2  
20 1 6 가  
, . . . ( " . " )  
, .  
( " . " ) .<

[2011.12.26.>](#)

1. .  
2. 가 .  
3. 가 10  
3 가 . ( .  
)  
가 . .< [2011.12.26.>](#)  
가 ( )

3  
3 .< [2011.12.26.>](#)  
20 1 가  
, 20 1 6  
2 , 8  
.< [2011.12.26.>](#)  
21  
.< [2011.12.26.>](#)

[ [2010.11.5.](#) ]

26 ( 가 ) 20 3 21 2  
가 가 가 2 가 .  
1 가 7 ( 7  
) 5 .  
[ [2010.11.5.](#) ]

27 ( ) 22 1 3 . 6 . 8  
. 9 가 , 가  
.< [2016.1.15.>](#)  
1.  
가. 가 ,

. 25 2 2  
. 79 1 2 가  
( )



2.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2010.11.5.](#) ]

28 ( ) 22

- 1.
- 2. , , ,
- 3.
- 4. ,
- 5.
- 6.

[ [2010.11.5.](#) ]

29 ( 가 ) 가 가 26

[ [2009.8.7.](#) ]

30 ( ) 25 1 2 " < [2013.3.23.](#), [2014.11.19.](#), [2015.8.19.](#) >

- 1.
- 2. ,
- 3. ,
- 4.
- 5. ,
- 6.

[ [2010.11.5.](#) ]

31 ( ) 25 1 7

- 1.
- 2. 가
- 3. 100 10 ( )
- 4.

2 . 1

1 2 7 가 .

- 1.
- 2.

3.

4.

1 2

3

25 1 7  
9

6187

1.

2.

[ 2010.11.5.]

32 ( )

26 1

[ 2010.11.5.]

33 ( )

30 4

1. ,가 ,

2. 가 100

3. 가 100 「 」

4. 가

[ 2010.11.5.]

34 ( )

25 1 1

2 · 4 · 6 , 7 , 7 2 , 8 , 30 1 2

. <

2013.11.22., 2015.8.19.>

[ 2010.11.5.]

35 ( )

14 1 2

[ 2009.8.7.]

4

36 ( )

[ 2010.11.5.]

37 ( 가 )

2 가 34 가

가

[ 2010.11.5.]

38 ( 가 )

가

, 15 가

- 1. 3 가
- 2. 가
- 3.

가 1

가 가

4 가 ,

1 가

[ 2010.11.5.]

39 ( ) 15 1 "

. < 2013.3.23., 2014.11.19.>

- 1. 가
- 2.
- 3. 가 ,
- 4.
- 5. 42 42 3 43

6. ( 6 )

7. 16 1 " "

- 1. 1 1 4
- 2. 42 , 42 3 42 4 ,
- 43

3. ( )

4. [ 2010.11.5.]

40 ( ) 가 5 (

6 )

1 1 1 가 가 가

가

45 1

( "

" )

[ 2010.11.5.]

41 ( ) 가 가  
 37 4 37 가

[ 2010.11.5.]

42 ( ) 39 4 " " . <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1. 가 가
- 2.
3. 가 ( 39 2 )
4. ( 가 가 )  
 2 ( )
5. 15 1 가
- 가.  
 . ( 가 )
6. 15 3 가 300 가
7. 15 6
8. 39 2
9. 45 1 40 5
10. 43 6 ( " " )  
 가 가 가
11. 29 2 88 1 , 3 5
12. 95 1 4 가
- 12 2. 127 2 3 가
13. 1 12 2  
 [ 2010.11.5.]

42 2( ) 43 1 " " . < 2013.3.23., 2014.11.19.>

[ 2010.11.5.]

43 ( ) 가 가

39 2

[ 2010.11.5.]

44 ( )

45 1

40 5

45 2

가

가

가

10

[ 2010.11.5.]

45 ( ) 48 1 1

[ 2010.11.5.]

46 ( )

39 2

가 18 3 가  
2 가 1 가 가

.< 2016.1.15.>

[ 2010.11.5.]

5

47 ( )

8

9

7 . < 2014.2.7.>

1

1

53 1 1 • 3

[ 2010.11.5.]

48 ( )

50

가

[ 2010.11.5.]

49 ( )

10

가 41

11

[ 2010.11.5.]

50 ( ) 가 12 71

[ 2010.11.5.]

51 ( ) 가 가 41 , 49 50

[ 2010.11.5.]

52 ( ) 가 가 41 , 49 50 37 2 2 ( " " ) 가

[ 2010.11.5.]

53 ( ) 가 가 41 , 49 50 37 2 1 · 3 4 ( " " ) 가

- 1. 가
- 2.
- 3.
- 가.

30 , 94 90

64 1

- 4. 가
- 5.

가 1

[ 2010.11.5.]

54 ( ) 가 가 41 , 49 50 37 2 5 7

( " " ) 가

[ 2010.11.5.]

55 ( ) 가 가  
( 「 」 171 4  
) 「 」 가  
13  
< 2014.10.16.>  
1 . . . .

[ 2010.11.5.]

56 ( ) 55  
1.  
2.  
3. 가  
[ 2010.11.5.]

57 ( ) 가 41 , 49 50

[ 2010.11.5.]

58 ( ) ,  
「 」  
1. 「 」 652 가  
2. 「 」 657  
3. 「 」 680  
4.  
5.

[ 2010.11.5.]

59 ( )  
가 53  
가  
[ 2010.11.5.]

60 ( 가 ) 73  
75 가

[ 2010.11.5.]

61 ( ) 41 , 49 50

68

[ 2010.11.5.]

62 ( ) 41 ,  
49 50 38 1 , 54 1 71 2  
2 (

1.

2. 가

3. 가

4. 가

[ 2010.11.5.]

63 ( ) 가  
45 가

[ 2010.11.5.]

64 ( ) 51 1 2  
가

" " )가 1 가 (

2 가

1 3

[ 2010.11.5.]

65 ( ) 16 17

[ 2010.11.5.]



66 ( )

67 ( ) 16 1  
17 1

[ 2010.11.5.]

68 ( ) 69 1  
1

69 1 70 2

[ 2010.11.5.]

69 ( ) 70 68 2

. < 2013.3.23., 2014.11.19. >

70 2

1 2 가

- 1.
- 2.
- 3.
- 4.
- 5.

[ 2010.11.5.]

70 ( ) 71 1

1. , , , , , , , : 100 5

2. , , , , , , : 100 4

3. , ( ), , , , : 100 3

4. 1 3 : 100 2

5. : 100 3

6. , 가 , , : 100 2

71 1

. < 2014.2.7. >

1. 「 」 1

2. , 가

가

3. 3 ( )

[ 2010.11.5.]

71 ( ) 72

가

1

1

가

1.

2.

3.

가가

4.

37 2 5

30

가

3

3 2

3

5

가

68 1

6

가

62

[ 2010.11.5.]

72 ( 가 ) 73 1 1

, " 가"

74 4 1

가

, " 가

가 "

가

가

, "

가 "

가

1.

=

/

2.

= 가 x

3.

= ( 가 가 - 가 ) / 가

10 1 2 가 1 1

1 1

1. 가 가 가 가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 )

73 1 2 ( )

.< 2013.3.23., 2014.11.19.>

1.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가.

「 」

「 」

3. 7 1 1 가

4. 1 3

73 1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가

73 3 78 2

• 3 5

가 가

= 가 가 × ( ) ×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 7

30

가 가

가

4

가

.< 2013.3.23., 2014.11.19.>

[ 2010.11.5.]

73 ( ) 74

가

가

1

72 8 9

[ 2010.11.5.]

74 ( ) 75

가 가

1 72 8 9

[ 2010.11.5.]

75 ( ) 90 1

1. : 1000 1
2. ( 16 3 ): 1000 1.5
3. 가 , ( 16 3 ), : 1000 2.5
4. 가 : 1000 5

[ 2010.11.5.]

75 2( ) 30 2 2 2

- 1.
- 2.
- 3.

가

[ 2014.2.7.]

76 ( 가 ) 92 1 가

2 가 가 가 6  
가 가 가 2  
가 2 가 2  
가 가 가

4 6 1

[ 2010.11.5.]

76 2( ) 31 1 가

[ 2014.10.16.]

77 ( 가 ) 92 1 5

가

92 6 14

가 가

[ 2010.11.5.]

77 2( ) 31 2 1 92 2

1. 31 2 1 1 92 2 1 :

3

2. 31 2 1 2 92 2 2 가

: 4

1

2 1

[ 2014.2.7.]

6

78 ( ) 95 1 1 2

96 2

1

15

가

가

. < 2015.8.19.>

1.

2.

3.

4.

5.

6.

7. ( )

8.

9.

10.

96 2 1

( " " )

, 96

3

가

1

.< 2015.8.19.>

[ 2010.11.5.]

79 ( ) 78

가

가

1. 1 15 : 2 20

2. 1 16 : 10

[ 2010.11.5.]

80 ( ) 79 2  
1 30

[ 2010.11.5.]

81 <2007.10.5.>

7

82 ( ) 122 가

- 1. ,
- 2.
- 3.
- 4. ,

112 ( " " )

2 1 30

[ 2010.11.5.]

83 ( )

[ 2010.11.5.]

8

84 <2014.2.7.>

85 ( ) 125  
< 2013.3.23., 2014.11.19.>

- 1. 가. ( )
- 가 가 ( , , )
- ( )

. ( )

. 42 1 1

2.

가. ( )

. ( . )

. ( . )

[ [2010.11.5.](#)]

86 ( )

1. ,

2. ( )

1

. < [2013.3.23.](#), [2014.11.19.](#) >

[ [2010.11.5.](#)]

87 ( ) 「 」

2 3

, 「 」 2 3

. < [2013.3.23.](#) >

1.

2.

가

3.

[ [2011.12.26.](#)]

< 315 ,2006.1.2. >

1 ( )

2 ( ) 1

3 ( ) 75 2 3

4 ( 가 ) 가

2

5 ( )

6 ( ) 「 70 4 」  
「 」

< 396 ,2007.10.5.>

1 ( )

2 ( ) 53 1 3

3 ( )

< 407 ,2007.12.13.>

< 1 ,2008.3.4.>

1 ( )

2 4

5 ( ) <23>

<24>

14 1 , 23 , 39 1 , 23 2 , 24  
, 42 2 , 84 85 " "

5 2 , 6 1 5 , 7 1 1 , 8 2 , 9 2 •3 ,  
15 5 , 23 2 5 , 24 2 , 30 5 , 42 13 , 42 2 2 , 64 1 , 72  
4 4 , 72 9 86 2 " " " " .  
42 2 1 " " " " .

<25> <33>

< 54 ,2008.12.31.>

1 ( ) . < >



2

3 ( )

5 1 2 24 2 가 " " " " .  
6 4 " " " " .

< 71 ,2009.3.16.>

1 ( )

2 <2013.3.15>

< 95 ,2009.8.7.>

1 ( ) 2009 8 7 .  
2 ( 가 가 가 ) 72 7

3 ( 가 ) 2

< 121 ,2009.12.30.>

2010 3 1 . 31 3 .

< 171 ,2010.11.5.>

1 ( ) , 62 , 64 , 2 8 7

2011 1 1 .

2 ( 가 ) 2 7

가 가

3 ( 가 ) 「

」( 22303 ) 15 4 5

가 100 가 가

42 6 .

4 ( ) 가

( ) 가

2 8 .

< 198 ,2011.3.16.>

< 266 ,2011.12.26.>

- 1 ( ) .
- 2 ( ) 25 3 • 4 87

< 348 ,2013.3.15.>

- 1 ( ) .
- 2 ( 가 ) 가  
2 .

< 1 ,2013.3.23.>

- 1 ( ) .
- 2 4
- 5 ( ) <36>
- <37>
- 5 2 , 6 1 5 , 4 , 7 1 1 , 8 2 , 9
- 2 , 3 , 15 5 , 23 2 5 , 24 2 , 25 2 1 가
- , 30 5 , 42 13 , 42 2, 69 1 , 72 4 4 , 9 86
- 2 " " " " .
- 14 1 , 23 2 , 24 , 30 , 39 1
- , 42 , 42 2, 84 85 "
- " " " " .
- 87 " " " " .
- <38> <51>

< 29 ,2013.11.22.>

- 1 ( ) 2013 11 23 .
- 2 ( 가 ) 가  
2 .

< 57 ,2014.2.7.>

- 1 ( ) 2014 2 7 .
- 2 ( ) 70 2 1 1
- 3 ( 가 ) 77 2, 2 3 • 4 • 8 •  
9 • 12 , 3 4 가 가

< 94 ,2014.10.16.>

< 1 ,2014.11.19.>

- 1 ( ) , 6
- 2 5
- 6 ( ) <28>  
<29>  
5 2 , 6 1 5 , 4 , 7 1 1 , 8 2 , 9  
2 , 3 , 15 5 , 23 2 5 , 24 2 , 25 2 1 가  
• , 30 5 , 42 13 , 42 2, 69 1 , 72 4 4 , 9 86  
2 " " " " .  
14 1 , 23 2 , 24 , 30 , 39 1  
, 42 , 42 2 85 " " "  
"  
<30> <42>

< 32 ,2015.8.19.>

- 1 ( ) .
- 2 ( 가 ) 가  
2 .

< 60 ,2016.1.15.>

1 ( )

2 ( )

## [별표 1] &lt;개정 2014.2.7&gt;

## 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68조 관련)

| 공 종   | 담보책임<br>존속기간 |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
| 가. 교량   | 10년          |
|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2년           |
| 3)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1) 및 2) 외의 공종   |              |
| 나. 터널   | 10년          |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5년           |
| 2) 1) 외의 시설   |              |
| 다. 철도   | 7년           |
|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5년           |
| 2) 1) 외의 시설   |              |
| 라. 공항 및 사도  | 7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5년           |
| 2) 1) 외의 시설   |              |
| 마. 항만, 사방 또는 간척   | 7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5년           |
| 2) 1) 외의 시설   |              |
| 바. 도로(암거,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 사. 댐  | 10년          |
|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 5년           |
| 2) 1) 외의 시설   |              |
| 아. 상수도·하수도  | 7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3년           |
| 2) 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   |              |
|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 차. 부지정지   | 2년           |
|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 5년           |
| 3) 1) 및 2) 외의 시설  | 3년           |
| 파. 그 밖의 토목공사  | 1년           |
| 하. 건축   | 10년          |
|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의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5년           |
| 2)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외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   | 1년           |
| 3) 건축물 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   |              |
| 거. 전문공사   |              |

|   |     |
|---|-----|
| 1) 실내의장   | 1년  |
| 2) 토공   | 2년  |
|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
| 4) 방수   | 3년  |
| 5) 도장   | 1년  |
| 6)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 7) 창호 설치  | 1년  |
| 8) 지붕   | 3년  |
| 9) 철물(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물은 제외한다)   | 2년  |
| 10) 철근콘크리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 3년  |
|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 13) 온실 설치   | 2년  |
| 14) 보링  | 1년  |
| 15)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하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 1년  |
| 16) 판금  | 1년  |
| 17) 보일러 설치  | 1년  |
| 18) 포장  | 2년  |
|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 2년  |
| 20) 자갈도상 철도·케도 공사   | 1년  |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
| 가. 발전설비공사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2) 1) 외의 시설공사   | 3년  |
| 나.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 5년  |
|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
|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밀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 2) 배전설비공사   | 3년  |
| 라. 송전설비공사   | 3년  |
|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 바. 배전설비공사   |     |
| 1)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
|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   |     |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
|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 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 가. 성곽   |     |
| 1) 석성(石城)   |     |
|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 2년  |
| 3) 전축성(塹築城)   | 3년  |
| 4) 목책성(木柵城)   | 1년  |
| 나. 탑·석조물  |     |
|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 5년  |
| 2) 전탑(塹塔)   | 3년  |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 7년  |
| 다. 목조건축물  |     |
| 1) 지붕   |     |
| 가) 산자(椽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2년  |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 2) 목부재(木部材)   |     |
| 가)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 나) 그 밖의 구조재   | 2년  |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繕材)  | 1년  |
| 4) 기초 및 기단  |     |
|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월대의 지대석  | 5년  |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 2년  |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2년  |
| 라. 담  |     |
| 1) 사피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 5년  |
| 2) 그 밖의 사피석담  | 3년  |
| 3) 돌담, 자연석담, 관축담, 토담, 전축담, 외면담  | 2년  |
| 마. 분묘   |     |
| 1) 봉분시설(잔디 심기는 제외한다)  | 2년  |
| 2) 구조부  |     |
| 가) 적석총(積石塚)·석곽묘(石槨墓)  | 5년  |
| 나) 전축분(塹築墳)   | 3년  |
| 다) 목곽묘(木槨墓)   | 1년  |
| 3) 병풍석(屏風石)   | 3년  |

|  |    |
|--|----|
| 바. 도로  |    |
| 1) 암거, 배수로, 측구, 맨홀   | 2년 |
| 2) 포장  |    |
| 가) 박석, 포방전   | 2년 |
| 나) 마사토, 강회다짐, 그 밖의 혼합토 등   | 1년 |
| 사. 철물  |    |
|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 2)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 아. 조경, 식물보호, 발굴지정비, 벽화 등   |    |
|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 2) 식물보호  | 3년 |
| 3) 발굴지 정비  | 2년 |
| 4) 불상개금, 도금, 탕화, 옷칠 등  | 5년 |
|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
| 6.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



[별표 2] &lt;개정 2016.1.15.&gt;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한기간              |
|---|-------------------|
|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                     |
|---|---------------------|
| 급한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                     |
|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
|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
|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나. 삭제   |                     |
|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                   |
|---|-------------------|
| 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
|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
|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
|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                   |
|------------------------------|-------------------|
|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 금액비율을 말한다.

[별표 3] &lt;개정 2016.1.15.&gt;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과징금 부과사유  | 과징금 부과율 |
|---|---------|
|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 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10%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5%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4%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3%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2%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1%      |
|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 10%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 5%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 4%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 1.5%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 10%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 5%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 4%      |

|   |      |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 1.5% |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5%   |
|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3%   |
|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1.5% |
|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 5%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 4%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 4%   |
|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3%   |
|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2%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2%   |
|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 2%   |
|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                                | 5%   |



|   |      |
|---|------|
| 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br>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br>계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 3%   |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br>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br>해를 발생시킨 자  |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br>우   | 7.5% |
|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br>인 경우   | 5%   |
|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br>경우   | 3%   |
| 6.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br>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br>한 자  | 3%   |
|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br>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br>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br>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br>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0.5% |
|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br>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br>제출하지 아니한 자   | 0.5% |
|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br>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br>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0.5% |
|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0.5% |
| 7.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0.5% |

|                                 |      |
|---------------------------------|------|
| 8.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 1.5% |
| 9.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1.5% |
| 10.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 4%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표 4] &lt;개정 2016.1.15.&gt;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과징금 부과사유   | 과징금 부과율 |
|--|---------|
|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br>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 30%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 15%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 12%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9%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 6%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3%      |
|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br>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 30%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br>미만인 자           | 15%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br>미만인 자           | 12%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br>미만인 자           | 4.5%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 30%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br>만인 자            | 15%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br>만인 자            | 12%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br>만인 자             | 4.5%    |

|   |                |
|---|----------------|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15%            |
|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9%             |
|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 4.5%           |
|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 15%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 12%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 12%            |
|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 9%             |
|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6%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6%             |
|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 6%             |
|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
|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4.5%           |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 9%             |

|   |       |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9%    |
|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 15%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 계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  | 9%    |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22.5% |
|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 15%   |
|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9%    |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9%    |
|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5%  |
|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5%  |
|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1.5%  |

|   |      |
|---|------|
| 다.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1.5% |
|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30%  |
|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15%  |
|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9%   |
|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15%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9%   |
|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9%   |
|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0%  |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5%  |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9%   |
|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4.5% |
|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 1.5% |
|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 4.5% |

|                                  |      |
|----------------------------------|------|
|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 4.5% |
|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 4.5% |
|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4.5% |
|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 9%   |
|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 12%  |
|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 30%  |
|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15%  |
|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4.5% |
|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5% |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등록사항  | 등록관서            |         | 등록일        | . . . . |
|   | 유효기간            | . . . . | 부터 . . . . | 까지      |
|   | 등록종목<br>(세부 품목) |         |            |         |
| <p>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귀 발주기관(발주자)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 <p>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자치단체의 장 . . . . . (인)</p>  |                 |         |            |         |
| 구비서류: 없음  |                 |         |            | 수수료     |
|   |                 |         |            | 없음      |
| <p>※주의사항</p> <p>1. 이 증서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p> <p>2. 기재사항 중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일반<br/>(제한)<br/>지명         </div> 입찰 참가통지서   |           |     |          |     |
|--|-----------|-----|----------|-----|
| 입찰<br>참가<br>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br>내용   | 입찰건명      |     |          |     |
|  | 현장설명      | 일시: |          | 장소: |
|  | 입찰        | 일시: |          | 장소: |
|  | 입찰등록마감일시  |     | 년 월 일    | 시까지 |
|  | 서류제출처     |     | (전화번호: ) |     |
| <p>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하여<br/>통보하오니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관서</p> <p style="margin-left: 100px;">자치단체의 장 또는</p> <p style="margin-left: 300px;">성명 (인)</p> <p style="margin-left: 150px;">계약담당자</p> <p style="margin-left: 100px;">귀하</p> |           |     |          |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 참가 신청서   |   |   |        | 처리기간    |
|---|---|---|--------|---------|
|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개요  | 입찰 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 |
|   | 입찰건명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보증금률: %<br>· 보증금: 금 원정(₩ )<br>· 보증금 납부방법:                                     |        |         |
|   |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 사유:<br>·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대리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br>성명:<br>주민등록번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br><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br/>           신청인 (인)<br/>           귀하         </div> |   |   |        |         |
| 구비서류  |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        | 수수료     |
|   |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없음      |
|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 성명: (인)   |        |         |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 참가신청증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입찰<br>개<br>요  | 입찰공고<br>(지명)번호 |  | 입찰일    | . . . |
|   | 입찰건명           |  |        |       |
| 신<br>청<br>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p>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단체의 장 또는      성명      (인)<br/>계약담당자</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서   |           |          |        |  |
|---|-----------|----------|--------|--|
| 입찰내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    |  |
|   | 건명        |          |        |  |
|   | 금액        | 금 원정(₩ ) |        |  |
|   | 준공(납품)연월일 |          |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p>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서   | 입찰번호  |   |   | 입찰금액   |        |        |   |        |        |        |   |   |   |   |   |  |
|---|---|---|---|--------|--------|--------|---|--------|--------|--------|---|---|---|---|---|--|
|   | 백   | 십 | 일 | 천<br>억 | 백<br>억 | 십<br>억 | 억 | 천<br>만 | 백<br>만 | 십<br>만 | 만 | 천 | 백 | 십 | 일 |  |
| 1. 공고번호: 제                    호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 2. 입찰건명: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 3. 준공(납품)연월일: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br>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br>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
|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
|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
| 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
|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 (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 따라 오른쪽에 표시된 입찰금액<br>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일까지<br>공사(물품·용역)를 완공(제조·<br>납품)할 것을 약속하며 입찰서를<br>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첨부: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br>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br>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br>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br>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1.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합니다.<br>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br>- 바르게 표기한 것: ●<br>- 틀리게 표기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 참가신청 시 부여된 번호를 표기합니다.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4. 매 금액단위란은 1칸만 표기합니다(빈칸으로 두거나 2칸 이상 표기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인)   |   |   |   |        |        |        |   |        |        |        |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7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 제 호       |
|---|--------------|--|-----------|
|   |              | 공고번호   | 제 호       |
| 계약자   |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
|   | 계약상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또는 법인명</li> <li>· 법인등록번호</li> <li>· 대표자</li> <li>· 주소</li> <li>· 전화번호</li> </ul> |           |
| 계약내용  | 공사명          |  |           |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   | 총공사부기금액      | 금  |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 원정(₩ )    |
|   | 현장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착공연월일        |  |           |
|   | 준공연월일        |  |           |
|   | 그 밖의 사항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           |
| 공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담보책임 존속기간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br/>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br/>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br/>4. 설계서 1부<br/>5. 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자치단체의 장 또는<br/>계약담당자 (인)<br/>계약상대자 (인)</p>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 제                  | 호  |    |
|---|--------------|------------------------------|--------------------|----|----|
|   |              | 공고번호                         | 제                  | 호  |    |
| 계약서   |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    |    |
|   | 계약상대자        | · 상호 또는 법인명<br>· 주소<br>·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br>· 전화번호 |    |    |
| 계약내용  | 물품명          |                              |                    |    |    |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    |
|   | 총제조부기금액      | 금                            | 원정(₩               | )  |    |
|   | 계약보증금        | 금                            | 원정(₩               |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납품일          | ~                            |                    |    |    |
|   | 납품장소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붙임서류: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br/>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br/>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br/>4. 규격 및 내용서 1부<br/>5. 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자치단체의 장 또는<br/>계약담당자 (인)<br/>계약상대자 (인)</p> |              |                              |                    |    |    |
| 물 품 내 역 서   |              |                              |                    |    |    |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257mm × 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9호서식] &lt;개정 2010.11.5&gt;

(앞쪽)

| 용역 표준계약서   |         | 계약번호                         | 제 호                |
|--|---------|------------------------------|--------------------|
|  |         | 공고번호                         | 제 호                |
| 계약서  | 발주처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
|  | 계약상대자   | · 상호 또는 법인명<br>· 주소<br>· 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br>· 전화번호 |
| 계약내용   | 용역명     |                              |                    |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  | 총용역부기금액 | 금                            |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 원정(₩ )             |
|  | 지연배상금률  |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        |                    |
|  | 위치      |                              |                    |
|  | 그 밖의 사항 |                              |                    |
|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 1. 용역 입찰유의서 1부<br/>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br/>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br/>4. 과업내용서 1부<br/>5. 산출내역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자치단체의 장 또는<br/>계약담당자 (인)<br/>계약상대자 (인)</p>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0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                  |         |           |        |
|----------------------------------|---------|-----------|--------|
|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
| 계약번호                             | 제 호     | 계약(예정)연월일 |        |
| 계약금액                             | 금       | 원정(₩      | )      |
| 계약보증금액                           | 금       | 원정(₩      | )      |
| 보증금 납부방법                         |         |           |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br>.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 성명:       | (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1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                         |           |       |
|------------------------------------|-------------------------|-----------|-------|
|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
| 계약번호                               | 제 호                     | 계약(예정)연월일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           |       |
| 보증금 납부방법                           |                         |           |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br>.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 성명: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2호서식] &lt;개정 2010.11.5&gt;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                  |                   |
|-------------------------|----------|------------------|-------------------|
| 입찰번호                    | 제 호      | 입찰연월일            | . . . .           |
| 계약건명                    |          |                  |                   |
| 계약번호                    | 제 호      | 준공연월일            |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          |                  |                   |
| 공 종                     | 공종별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 담보책임 존속기간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 . . |
|                         | 원정       | ( )%금 원정         | . . . . ~ . . . . |
| 보증금<br>납부방법             |          |                  |                   |
|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          | 성명:              | (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11.5>

각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기관명: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11.5>

|   |           |                       |         |
|---|-----------|-----------------------|---------|
| <p style="font-size: 1.2em;">기 관 명</p>        |           |                       |         |
| 우편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담당자:    |
| 문서번호:<br>발 신 일:<br>수 신:<br>참 조:<br>제 목:       |           |                       |         |
| <p style="font-weight: bold;">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p> |           |                       |         |
| 부<br>정<br>당<br>업<br>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영 업 종 목<br>(세 부 품 목)                          |           | 면허 · 등록번호 등           |         |
| 제<br>재<br>내<br>용                              | 제 재 근 거   |                       |         |
|   | 해약연월일     |                       |         |
|   | 제재연월일     |                       | 만료연월일   |
|   | 제 재 기 간   | . . . . . ~ .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br>(그 밖의 참고사항)   |           |                       |         |
| 자치단체의 장                                       |           |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